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0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양수 · 김태호 · 김은혜
이인선 · 엄태영 · 김재섭
강대식 · 김선교 · 박성민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위나”를 “행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
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